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-122호

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: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하고, 지역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○ 이에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

급 가능 여부 확인, 구매정보 제공 및 구매실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
나.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및 공급 가능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)

다.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4항)

라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과의 연계,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1월 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zian1121@korea.kr

라. 문의처 : (044) 300-7313

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)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
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구매목적, 품질, 가격, 납품기한 및 공급 가능 물량 등 필요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,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, 규격, 가격, 공급 가능 물량 및 구매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「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⑥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“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.
<신 설>	제8조의2(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)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역생

	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구매목적, 품질, 가격, 납품기한 및 공급 가능 물량 등 필요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,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, 규격, 가격, 공급 가능 물량 및 구매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⑤ 시장은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「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 ⑥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지역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